-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○ 체육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 현행화 및 체육시설현황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체육시설에 관한 정의 정비(안 제2조 및 별표3)

○ 생활체육관, 다목적체육관, 다목적구장의 명칭 변경 및 광시국민체육센터,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사용료 추가 등 (안 제10조 및 별표 1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내용 정비(제13조 관련 별표 2)

○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(안 제2조, 안 제8조, 안 제 20조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그 밖의

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3.10.27.~2023.11.15.)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

라.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(2023.11.2.가족지원과)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예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

- 안 제2조 체육시설의 명칭을 정비하여 예산의 지명도를 높였고, 체육시설별 위치와 관리부서를 명시하여(별표 3)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

○ 관계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목적,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